

## 학생복지위원회 규정

제정 2013. 02. 28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경동대학교 학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4조의 2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복지시설의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건의(장애인 복지시설 포함)
2. 학생복지위원회 활동에 관한 자문과 지도
3. 기타 학생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
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로 장학위원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학생복지처장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 (회의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관계 부서의 직원 중 총장이 임명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